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9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1일
- 라. 상정일 :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5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태균)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의·자문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 상위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상 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하고, 투자·출연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관할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 ※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중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록물 관리 대상이 되도록 상위법령의 적용범위를 반영함.
-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사업,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한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서울기록원의 개원·휴원일 및 운영시간을 규정함(안 제9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3조 등).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19.1.10.~2019.1.30.)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며, 서울시 기록물의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개정 사항〉

- **서울기록원 시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
  -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정립
- **서울기록원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4조~제6조)
  - 민간기록물 수집·보존 관련 사업 추진,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
  - 기록물 관리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서울기록원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정책과 서울기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해 심의·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신설
-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하고, 투자·출연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관할 공공기관”으로 변경
-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18조~제24조)
  - 조례 조문의 체계(순서)를 신설 조항과 맞춰 재정리

- 서울기록원은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서울혁신파크 내)해 있으며, 2018년 12월 완공(32개월, 498억원 소요)하여 2019년 5월까지 시범운영 후 2019년 5월 15일, 공식 개관을 하였음.

## 〈서울기록원 현황〉

### □ 서울기록원 개요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혁신과크내)
- 건립규모 : 연면적 15,004㎡(지하2층/지상5층)
- 공사기간 : '16.4월 ~ '18.12월(32개월)
- 총사업비 : 498억원 (시설비425, 감라부대비31, 장비비42)



〈1층 로비〉



〈 전문보존서고〉



〈 시청각 기록물 복원실〉

### □ 운영방향

- 안정기('19년~'20년) : 개관 및 조기 안정화 도모, 지속가능한 운영체제 구축
- 도약기('21년~'22년) : 본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체감 성과 창출

### □ 운영계획

**시범운영**  
( '18,12월~'19.5월 )



**전시관공개**  
( 2019년 3월 )



**공식개관**  
( 2019년 5월 )

- ◆ 시설 안정화
- ◆ 기록물 보존환경 최적화
- ◆ 운영 프로그램 준비

- ◆ 기록 전시관(상설,기획)
- ◆ 전시 연계 프로그램 병행
- ◆ 개관전 홍보 효과 제고

- ◆ '19.5월말 개관식 개최
- ◆ 제막식,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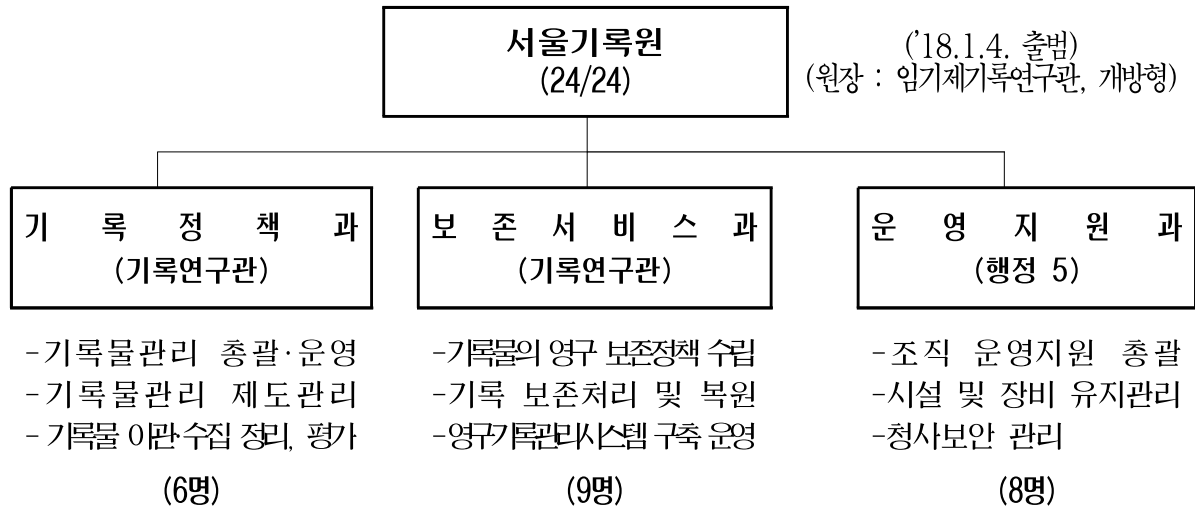
### ○ 주요업무

- 기록물 생산·관리·보존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관리
- 중요 기록물 영구보존정책 수립 및 실행, 훼손 기록의 보존처리 및 복원
- 보존기록의 대시민 열람서비스 제공, 기록전시 등 기록문화서비스 제공

○ 예산현황 : 4,994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비고
계	2,021	4,994	2,973	
사업비	1,783	4,859	3,076	
재무활동비	-	-	-	
행정운영경비	238	135	△103	공공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 조직 및 인력 : 3개과 24명 ('19.11. 기준)



구분	계	일반직(△1명)						연구직(+1명)	임기제			지방 경력관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소계	연구관	연구사	통계관리
정원	24명	12	1	2	8	1		7	4	3	1	1
현원	24명	11	1	5	3	-	2	8	4	3	1	1

**가. 서울기록원 시설 운영 규정(안 제9조 신설)**

○ 안 제9조는 서울기록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휴원일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1일, 설날, 추석</li> <li>- 매주 월요일</li> <li>※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원</li> </ul>	<p>오전 9시~ 오후 6시</p> <p>※ 열람실과 전시실의 운영시간은 서울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9조(개원·휴원 및 운영시간) ①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며, 기록물과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월 1일, 설날, 추석</li> <li>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li> <li>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서울기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열람실과 전시실의 운영시간은 서울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 서울기록원의 운영 시간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안 제9조는 운영시간 등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시설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안 제9조제2항 단서 규정에 “열람실과 전시실의 운영시간은 서울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기록원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기록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안 제9조제1항제2호에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1)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2)이 시행(18.7.10.)됨에 따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나.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등 추진(안 제4조 신설, 제10조)

- 안 제4조는 지역적·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 및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 안 제10조는 서울기록원이 “그 밖에 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시장은 지역적·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의 효과적인 수집과 보존을 위

- 1) 제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2)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 하는 날을 말한다.

	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p>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①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p> <p>2. 투자·출연기관 및 영구기록물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p> <p>〈신 설〉</p> <p>② 그 밖에 시와 관련된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p>	<p>제10조-----</p> <p>-----</p> <p>-----.</p> <p>1. 시에서 -----</p> <p>-----</p> <p>2. 관할 공공기관-----</p> <p>-----</p> <p>-----</p> <p>3. 그 밖에 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p> <p>〈삭 제〉</p>

- 본 개정조례안 제출 당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46조에 따르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는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며, 법 제11조제5항제7호에 따르면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에 대한 권한”만이 부여되어 조례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상위 법령이 개정(2019.10.31.)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음.
    - ※ 민간기록물의 정의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 수집관련 조항〉 (본회의가결 '19.10.31.)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도기록물관리기관만 해당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다만,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법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함)에 따르면 기록원은 공공기관(서울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 첫째, 서울기록원 개원 초기에 주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록물의 가치와 경중을 판단하여 수집, 보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결정에 책임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수집이 우려되며,
  - ※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15조는 가치 평가기준(별표 제1호)을 활용하여 민간기록물 수집 여부 결정
- 셋째, 민간기록물 수집시 소요되는 대가 지불 문제 등에 있어 가치판단 및 서울시 재정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20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가치평가) 수집부서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수집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준(별표 제1호)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구입)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

- 넷째, 현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기록물의 자율적 보존과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특색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중복적이고 상충적인 운영이 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2019년 3월 기준) 〉

구분	연번	지역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수장고 면적	유물 점수 (2018)	비고
박 물 관	1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종로구 새문안로 55	20,883	1,430	201,295	시립
	2	성동구	청계천박물관	성동구 청계천로 530	5,715	248	5,514	시립
	3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19,423	2,648	56,237	시립
	4	광진구	서울상상나라	광진구 능동로 216	19,693	121	155	시립
	5	성동구	수도박물관	성동구 왕십리로 27	6,663	49	873	시립
	6	중구	도시건축박물관	중구 태평로 1가 60-6	2,881	78	287	시립
	7	강서구	허준박물관	강서구 허준로 87	1,794	114	1,237	구립
	8	도봉구	둘리뮤지엄	도봉구 시루봉로1길 6	4,609	41	194	구립
	9	동대문	서울약령시	동대문 구왕산로128	1,543	73	784	구립

		한의학박물관						
10	서대문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7,001	476	37,829	구립	
11	서대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서대문구 통일로 251	7,686	32	240	구립	
12	성북구	선잠박물관	성북구 성북로 96	322	14.89	382	구립	
13	은평구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은평구 연서로50길 8	2,901	199	1,229	구립	
14	중구	손기정기념관	중구 손기정로 101	1,600	156	5,262	구립	
15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중구 덕수궁길 61	13,433	870	4,711	시립	
16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강서구 양천로 47길 36	3,305	140	357	구립	
17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 성북로 134	722	128	107	구립	
18	중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종로구 옥인1길 34	351	97	995	구립	

〈서울특별시 신규 박물관·미술관 건립 계획〉

연번	명 칭	개 관	위 치	연면적 (m <sup>2</sup> )	수장고 (m <sup>2</sup> )
1	시민생활사박물관	2019.5.	노원구 공릉동 622	6,919	480
2	서울우리소리박물관	2019.10.	종로구 외룡동 5-9외 1필지	1,410	49
3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2019.12.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외 8필지	5,559	520
4	서울공예박물관	2020.5.	종로구 율곡로3길 4	10,450	1,130
5	사진미술관	2021.6.	도봉구 창동 1-7	4,533	498
6	서서울미술관	2021.12.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	7,000	500
7	로봇과학관	2021.9.	도봉구 창동 1-7	6,053	259
8	삼청각전통食문화복합공간	2021.12.	성북구 대사관로 3일대	3,320	미정
9	한양도성박물관	미정	검토중	미정	미정
10	풍납토성 야외뮤지엄	미정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일대	미정	미정

**다.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안 제12조~안 제17조 신설)

-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기능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 구성	10명 이내(당연직 2명)	당연직 : 서울기록원장, 기록관장
위원 자격	기록물관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종사자	
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위원회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장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신 설〉			제12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

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2. 기록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물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  
정하는 사람

〈신 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p>〈신 설〉</p>	<p>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p> <p>제15조(위원회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②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u></li> <li>2. <u>심신쇠약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li> <li>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li> </ol>
<p>〈신 설〉</p>	<p>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u></p>
<p>〈신 설〉</p>	<p>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u>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서울기록원은 기록원장을 비롯하여 기록물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임용하고 있으며,
- 인력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23명 중 연구직군(7명)과 임기제(개방형 직위 포함, 4명)공무원 등 총 11명(47.8%)의 기록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서울기록원 인력현황>

구분	계	행정 직 군				기술 직 군				연구직군		임 기 제			
		소계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연구사	소계	4급 (연구관)	5급 (연구관)	6급 (연구사)
정 원	23	7	1	1	5	5	0	1	4	7	7	4	1	2	1
현 원	23	6	1	3	2	5	0	2	3	8	8	4	1	2	1
과부족	0	-1	0	+2	-3	0	0	+1	-1	+1	+1	0	0	0	0

- 둘째, 서울시에는 법에 따라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설치해야 하는 법정 위원회(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공개심의회)가 있음에도, 의무적인 설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구성 예정”이라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음.

<기록물평가심의회>

-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④ 생략

⑤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기록물공개심의회>

-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 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74조(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 ①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②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자문하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위원회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유사하고 중복적인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현재, 위원회공화국, 식물위원회<sup>3)</sup> 등 서울시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운영과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위원회 203개, 위원수 4,892명(2018년 12월 기준)

- 다만, 위원회 설치시에는 당연직 위원 관련 조문 수정사항\*과 위원회 해촉 사유 중 “심신쇠약”의 용어 사용 문제\*, 조문 체계상 존속기한 조문의 부칙으로의 이동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개정안 제13조제3항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으로, 제18조제1항으로 수정 필요

※ 심신쇠약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따른 정의가 없고, 마음과 정신의 쇠약 또는 신체와 정신의 쇠약 등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위원회 관련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심신쇠약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수정 검토

3) 이름만 있고 회의는 없다... 서울시 ‘식물위원회’ 수두룩, 헤럴드경제, 2018.6.29.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629000289>

## 라. 기록물 관리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안 제6조)

- 안 제6조는 기록물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표창)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면 표창장의 수여 대상을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기록물 관리 발전만을 위한 표창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표창 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도 표창의 영예성, 엄중성 등을 감안하여 수여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다.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 등(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 안 제2조 등은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하고, 조문 중 투자·출연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u>따</u> <u>라 서울특별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p>
<p>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제6조(서울기록원의 기능)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p> <p>2. <u>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u></p> <p>3. <u>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u></p> <p>4. (생략)</p> <p>5. <u>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u></p>	<p>제8조(서울기록원의 기능) ----- -----.</p> <p>1. <u>시, 관할 공공기관</u> ----- ----- -</p> <p>2. <u>시, 관할 공공기관</u> ----- ----- -----</p> <p>3. <u>시, 관할 공공기관</u> ----- ----- -----</p> <p>4. (현행과 같음)</p> <p>5. <u>시, 관할 공공기관</u> -----</p>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①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 투자·출연기관 및 영구기록물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신 설〉

② 그 밖에 시와 관련된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

제9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 및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 중 서울시립대학교는 별도의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6. 시, 관할 공공기관 -----

제10조-----

1. 시에서 -----

2. 관할 공공기관-----

3. 그 밖에 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

〈삭 제〉

제18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  
----- (이하 "영"이라 한다)  
----- 시를 -----

-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등에 따라 출연기관 중 기록물 관리 대상이 아닌 출연기관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공공기록물 관리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관리 대상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논쟁과 시비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기록물 관리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동 조례 정의 부분에 “관할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5. 4., 2014. 11. 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서울시 관할 공공기관의 범위>

-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 5개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18개 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4개

구분	기관명
지방공기업(5)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출자출연기관(18)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며, 민간기록물의 정의, 수집기준과 절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정의 규정(안 제2조) 중
  - 서울기록원 정의 부분 본문 중 “시민기록물”로 잘못 오기한 것을 “민간기록물”로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민간기록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규정(안 제4조) 중
  - 시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정함(안 제4조제3항).
-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해야 되는 대상기록물을 안 제4조에 따른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과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기록물로 함(안 제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호).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569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며, 민간기록물의 정의, 수집기준과 절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의 규정(안 제2조) 중
  - 서울기록원 정의 부분 본문중 “시민기록물”로 잘못 오기한 것을 “민간기록물”로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민간기록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규정(안 제4조) 중
  - 시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정함(안 제4조제3항).

-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해야 되는 대상기록물을 안 제4조에 따른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과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기록물로 함(안 제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호).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시민기록물”을 “민간기록물”로 한다.

안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본문 중 “받아”를 “받거나 수집하여”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에 따라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서울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안 제12조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3조제3항 본문 중 “제17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서울기록원”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행정기록물을 인수·보존 하며 <u>시민기록물</u>을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p> <p>5. “투자·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시장은 지역적·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의 효과적인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관련</p>	<p>제2조(정의) ----- ----- -----.</p> <p>3. -----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민간기록물</u>-----</p> <p>5. “<u>민간기록물</u>”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p> <p>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p>
〈신 설〉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① 서울기록원이 <u>이관 받아</u>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제10조----- -----<u>이관 받거나 수집하여</u>----- -----.</p> <p>3. 그 밖에 시와 관련된 <u>민간기록물</u></p> <p><u>&lt;신 설&gt;</u></p> <p>제12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 설치·운영)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p> <p>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u>&lt;신 설&gt;</u></p> <p>3.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u>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u></p> <p>제10조----- -----<u>이관 받거나 수집하여</u>----- -----.</p> <p>3. 제4조에 따라 수집·보존된 <u>민간기록물</u></p> <p>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u>서울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u></p> <p>제12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 설치·운영)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p> <p>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3. <u>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u></p> <p>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신설〉</p>	<p><u>제13조(위원회의 구성)</u>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u>제17조제1항</u>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u>제13조(위원회의 구성)</u>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u>제18조제1항</u>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을 “따라 서울특별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시민기록물”을 “민간기록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 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타기관과의 연계·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개원·휴원 및 운영시간) ①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며, 기록물과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울기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열람실과 전시실의 운영시간은 서울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물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쇠약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중전의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을 각각 “시, 관할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아”를 “받거나 수집하여”로 하고, 제1호 중 “시 및 소속 기관”을 “시”로 하며, 제2호 중 “투자·출연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3. 제4조에 따라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서울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16조 및 제17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9조)제1항 본문 “(이하 ”영” 이라한다)”를 “(이하 ”영”이라 한다)”로, “시 및 소속기관을”을 “시를”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시 및 소속기관이”를 “시에서”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14조) 중 “법 및”을 “법, 영,”으로,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서울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하고 제7조 앞에 “제2장 서울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기록물의 관리”를 삭제하고, 제12조 앞에 “제3장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를 삽입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기록물의 관리”를 삽입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생략)

5. “투자·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 2.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향토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②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삭제〉

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제2장 서울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 (생 략)

제6조(서울기록원의 기능)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타기관과의 연계·협력) 시장

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장 서울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8조(서울기록원의 기능) -----  
-----.



1.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 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 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 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생략)
5.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 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 기관 및 자치구의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7. (생략)

### 제3장 기록물의 관리

#### 〈신 설〉

1. 시, 관할 공공기관 -----  
-----  
-----
2. 시, 관할 공공기관 -----  
-----  
-----
3. 시, 관할 공공기관 -----  
-----  
-----
4. (현행과 같음)
5. 시, 관할 공공기관 -----  
-----  
-----
6. 시, 관할 공공기관 -----  
-----  
-----
7.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9조(개원·휴원 및 운영시간) ①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며, 기록물과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①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 투자·출연기관 및 영구기록물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신 설〉

② 그 밖에 시와 관련된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

제8조 (생략)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울기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열람실과 전시실의 운영시간은 서울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상 기록물)-----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1. 시에서 -----

2. 관할 공공기관-----

3. **제4조에 따라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서울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삭 제〉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장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제12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  
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  
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  
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 기록원장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물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

〈신 설〉

<신 설>

<신 설>

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쇠약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理)、기술(記述)、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이관、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23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  
----- 법, 영, --  
-- 시행규칙-----  
-----.

제2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